

ESG위원회 규정

2023.12.08 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아쏘시오홀딩스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고 한다) 이사회 내 ESG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위원회의 직무와 권한)

- ① 위원회는 환경(Environment)·사회(Social)·지배구조(Governance)와 관련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,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.
- ②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.
 1. 자료제출 요구
 2. 관계자의 위원회 출석 및 답변 요구
 3. 내부거래에 대한 직권조사 및 지원부서 활용
 4. 법령 및 회사 규정에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시정조치 요구
 5. 그 밖에 관리·감독에 필요한 사항
- ③ 위원회로부터 제2항 각 호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4조 (위원의 의무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고 한다)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2장 구 성

제5조 (위원회의 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며, 그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.
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다만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.

제6조 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사외이사인 위원 중 호선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사외이사인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.

제3장 회 의

제7조 (위원회)

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

제8조 (위원회의 소집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1주 전까지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3항의 절차 없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9조 (의결방법)

-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 (부의사항)

-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.
 1. ESG 관련 전략, 방침 목표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 2. ESG 중대성 평가
 3. ESG 관련 대외 공시보고의 심의 및 승인
 4. ESG 비재무 리스크 검토
 5. 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
 6.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(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)과의 거래 승인
 7. 내부거래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
8.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ESG 관련 활동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

2. 계열회사와의 연간 내부거래 실적

3.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으로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의결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 관련 위원 및 임직원으로부터 하역금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와의 거래 중 일상적인 영업거래는 연 1회 거래총액 한도로 승인받는 것으로 하며, 연간 10억원 미만의 일상적인 영업거래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의한 거래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.

제11조 (위원회의 활동 지원)

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이나 외부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,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 자료 수집, 기타 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사에 위원회의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.

제12조 (의사록)

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13조 (통지) 위원장은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이사회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4조 (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.